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

3. 주요내용

- 5개 통 증설 (안 별표14, 별표16, 별표22, 별표27)
 - 통·리 : 605개 통리(통 434, 리 171)
⇒ 610개 통리(통 439, 리 171)
- 51개반 증설, 1개반 폐지(안 별표14, 별표16, 별표17, 별표21, 별표24, 별표27)
 - 반 : 4,356개 반 ⇒ 4,406개 반(50개 반 증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아파트신축 등 통·리·반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는 605개 통리에서 선주원남동 2개, 형곡2동 1개, 광평동 1개, 양포동 1개 등 5개동의 증설로 610개 통리로 조정하였고
- 반은 4,356개 반에서 선주원남동 17개, 형곡2동 6개, 신평1동 2개, 공단2동 16개, 임오동 1개, 양포동 9개 등 51개 반을 증설하면서, 선주원남동 1개 반을 감하여 총 50개 반이 증가된 4,406개 반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